

[별표 3]

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

소 방 대 상 물	소화기구의 능력단위
1.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	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
2.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·유기장·지정문화재	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
3.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·집회장·시장·여관·호텔·여인숙·기숙사·4층이상의 공동주택·의료원·노인복지시설·아동복지시설·심신장애자복지시설·유치원·공중목욕장·공장·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·차고·주차장·비행기격납고·창고·지하가	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
4.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거장·대합실·사찰·교회·학교·학예전시관·사업장	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

(주)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,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·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.